####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3-96호

##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 (지원규모) 470개 과제 내외

분야	구분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비고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당 최대 1명	
채용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350개 과제 내외	- 기묘이 뷔테크이 	
	③ 소재부품장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당 최대 2명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2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겨'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내역사업별 개별 안내

###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 ①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6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 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十 正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 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18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3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3년 2월 8일 이후인 자(1983년 2월 8일 포함)

###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22.2.7)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나. 신청 및 평가방법

○ (신청·접수기간) '23. 2. 7(화) ~ '23. 3. 7(화) 18:00까지

# ○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Rightarrow$	서면평가	$\Rightarrow$	선정 통보	$\Rightarrow$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7 ~ 3.7		4 ~ 5월		5월 중		5월 말	6월 초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사업지표 70점\*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 R&D투자비율,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

# ○ 우대사항

구분	내용	우대사항
중소기업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50% 이상 우선 할당
	채용(예정) 연구인력이 여성인 경우	신규과제 선정 시 30% 이상 우선 할당
연구인력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의 교육과정을 '22.3월 이후 정상적으 로 이수하고 졸업한 연구인력	

## ○ 가점항목

분야	내용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신진, 고경력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연구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계속 고용기업	5점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 (최대 5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3점	벤처기업확인기관 확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2점	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 확인
연구인력 (최대 5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 공고일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 해당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	5점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채용예정자 <sup>*</sup>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3점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략품목 (최대 3점)		3점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략품목 적합성 평가

### 라.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舊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3.6.1예정)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 단, '지원인력 연봉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사업공고일 기준)

## 마.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지원 연구 인력의 채용(예정) 연구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지원 연구 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바.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출서류	제출방법
		1 1 3		끨수	해당시	"-0-
		법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본문2	0		시스템 직접 입력
1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2	(대차대 <u>:</u> * 국세청 * 설립 3 <sup>1</sup>	념의 '20, '21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조표, 손익계산서) 발급분만 인정 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0			
3	* 해외학 <sup>9</sup> 원본대2 - 번역공	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된 E필 날인하여 제출 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 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면도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본의 경우	0		
<b>(4</b> )	신청인력	<sup>부의</sup> 병적증명서			O(남성)	스캔본 업로드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0	
(5)	우대가점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0	
9)	증빙서류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피 - '23. 2 7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단 * 해당서류 이외에는 인정불가			0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0	
7	신용상E	∦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0		시스템 동의 시
8	중소기입			0		직인/서명 제출
9	중소기입	d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0		생략가능

### ②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9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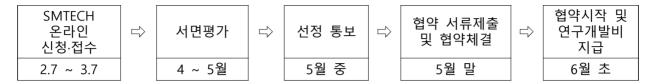
##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22.2.7)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3. 2. 7(화) ~ '23. 3. 7(화) 18:00까지

# ○ (선정절차)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사업지표 70점\*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 R&D투자비율,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

## ○ 우대사항

구분	내 <del>용</del>	우대사항
중소기업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50% 이상 우선 할당

## ○ 가점항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중빙서류)
	신진, 고경력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연구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계속 고용기업	5점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 (최대 5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3점	벤처기업확인기관 확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2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확인
연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 공고일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 해당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	5점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최대 5점)	여성인력	3점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확인
	채용예정자 <sup>*</sup>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3점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략품목 (최대 3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개발 품목이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디지털전환' 또는 '미래혁신 선도' 분야 전략품목에 해당 시 ( ** 참고 또는 기술로 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3점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략품목 적합성 평가

### 라.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舊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3.6.1예정)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 단, '지원인력 연봉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사업공고일 기준)

#### 마.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지원 연구 인력의 채용(예정) 연구인력을 연구전담요원<sup>\*</sup>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지원 연구 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다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바. 신청서류

αш	н и н		제결	<b>탈서류</b>	ᆌᄎᄡᄖ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중소기집 기술개월시원 연구개월계획시   : p	약문 문2	0		시스템 직접 입력	
1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문1	0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2	신청기업의 '20, '21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0		스캔본 업로드	
3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0			
4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동일여부 확인 * 고용(건강)보험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력)과	0			
(5)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명시된 기간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확인 (서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 해외경력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증명서 불인정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발급)을 접수마감 전날까지 제출한 인력에 대해연구전담요원 기존이력 여부 조회가능(상세내용은 FAQ 참고)	장의 함) 경우 등의	0			
6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O(만40세 이하 남성)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0		
7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우대기점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증빙서류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중심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0		
	- '23. 2. 7일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만 인정 * 해당서류 이외에는 인정불가					
8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0		
9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0		시스템 동의 시	
10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0		직인/서명 제출	
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0		생략가능	

### ③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 사업공고일 기준 동 사업을 통해 2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수혜 불가능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正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신진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고:	경력		해당없음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지원)			

-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 (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 고경력 연봉(세전금액):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신진)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고경력)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최대 5,000만원

### ○ 지워대상

- (지원기업) 다음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으뜸기업 선정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구 분	학위	인력 조건
신진	이공계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2018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3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고경력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

※ 세부 신청자격은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의 연구인력 신청자격을 참조

##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22.2.7)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3. 2. 7(화) ~ '23. 3. 7(화) 18:00까지

## ○ (선정절차)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사업지표 70점\*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 R&D투자비율,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의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 참조

## 라.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舊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3.6.1예정)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 단, '지원인력 연봉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사업공고일 기준)

#### 마.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지원 연구 인력의 채용(예정) 연구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지원 연구 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바. 신청서류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청서류 참조

### ④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격지워

#### ※ '22년 참여 공공연구기관(17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 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23년 변동가능)

- 파견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 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규모) 12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기도 기급파진 시원 3인 이대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sup>*</sup>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구기한영 시원 3년 	(한도 제한 없음)

-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 (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 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 ※ 강소기업 100,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 협력·상생모델:「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으뜸기업 선정기업

####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나. 신청 및 평가방법

- (신청·접수기간) '23. 2. 7(화) ~ '23. 12. 31(일)까지 상시 접수
-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서면평가 □ ◇ 현장평가 □ ◇ 선정기업 통보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 ○ (평가기준)

- (서면평가) 사업지표 7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 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다. 가젂항목

분야	가점사항		확인방법 (증빙서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	3점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확인
조 & 기어	소재부품장비 기업(강소기업100/100+, 스타트업100, 협력·상 생모델,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3점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확인
중소기업 (최대 5점)	신진, 고경력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연구인력이 정부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2점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2점	(연구소기업 등록증)

## 라. 지원제외 사항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전직한 인력이 연장지원 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 마.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 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지원기업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 ㅇ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 개발 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 브를 지급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바.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출서류 ├┈해당시	제출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매월 본등	문		시스템 직접 입력
1	신청마감일의 익일로 기재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u>₹</u> 1 O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2	신청기업의 '20, '21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0		스캔본 업로드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0	
4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0		시스템 동의 시
(5)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직인/서명 제출
6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0		생략가능
7	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0	스캔본 업로드
	<sup>                                     </sup>		0	

### 3. 기타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 ②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제외)

####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

사업명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신규 신청 가능 여부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신청 불가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1회 + 고경력 1회	신청 불가
2012121710712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신청 가능

-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④ 본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

####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가능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정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 기업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불이행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ul> <li>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li> <li>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li> </ul>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⑦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①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보증
  -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2-3211-5609)
- 때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 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3.4.4.)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 해남군(지정기간 : 2011.5.29.~2023.5.28.)
  -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제2021-442호, 제2022-328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 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방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2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22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⑦ 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채용지원 '23.6.1 예정, 파견지원은 건 별 협약시작일 상이) 전까지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⑧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 제에 참여하는 경우
  - \* 단,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를 제출 후 인정받은 경우 예외

#### 5.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ech.go.kr  $\rightarrow$  회원가입  $\rightarrow$  로그인  $\rightarrow$  과제신청  $\rightarrow$  지원사업  $\rightarrow$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o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 ② 2단계: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o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③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o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ㅇ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 ④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 o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제출 필수서류의 미제출 및 서류 오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제외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 접수 완료 후 <u>수정할 경우, 수정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 상태를 확인 필요</u>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가능)
- ☞ 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6. 문의처

구 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083, 9084, 9123, 9082, 9171, 9062, 9090
사업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088, 9089, 3460-9080, 9124, 9172
담당기관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23, 9082, 9171, 9062, 9090, 9080, 9124, 9172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258, 7386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044) 300-0842, 0847, 0852

# 참고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점 해당 전략품목

※ 전략품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붙임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74개 품목정의' 또는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를 참고바랍니다.

전략방향	전략분야	전략품목		
	Hellolel	AI 기반 교육서비스	Edge-Device기반실시간지능플랫폼	
		자가학습 기반 AI 솔루션	학습 데이터 증식 및 오류방지 솔루션	
	AI • 빅데이터 (9개)	AutoML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	
	(9711)	공간정보분석 및 공간빅데이터 융복합 솔루션	Robotics Process Automation(RPA) System	
		AI 소재 설계 시스템		
	*************************************	특화망 관련 시스템 및 장비	5G 프론트홀, 백홀	
	이동통신	5G 오픈랜 장비	5G RF 모듈	
디지털	(5개)	5G SA 스몰셀 기지국 및 관련장치		
전환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지능형 사이버 위협 보안관리 솔루션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컨텐츠 관리 플랫폼	공급망 보안 취약점 자동진단 솔루션	
	(5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터크레★	AI 기반 시각 인식 및 생성 솔루션	AR/VR/XR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6개)	AI 기반 리소스제작 솔루션	교육용(훈련)메타버스 플랫폼	
	(6711)	디지털 휴먼	실시간 인터렉션 플랫폼	
	서비스프래포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문화 중계 플랫폼	피트니스 제품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플랫폼 (6개)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비대면 교육 플랫폼	
	(0711)	디지털 업무공간(DWP) 플랫폼	전문인력 연계지원 서비스 플랫폼	
	711 - 21 - 21	지능형 물류/배송 로봇	지능형 가정용 로봇	
	지능형로봇 (6개)	지능형 농업 로봇	행동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지능형 살균/방역 로봇	환자 보조 로봇	
	시스템반도체	전력반도체	섀시제어 차량용 반도체	
	(6개)	모터구동용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_	(0711)	시스템반도체 설계 IP	보안 솔루션, 스마트카드 IC	
	우주·항공 (6개)	접촉식 무인이동체 충전 시스템	운송/배달 드론	
		모니터링 드론	저고도 무인비행체 교통관리 시스템	
		항공전자 및 부품	UAM 및 부품	
	자율주행차 (5개)	자율주행 평가-개발 시스템	자율주행차 상태 기록 시스템	
미래혁신		자율주행 판단 시스템	스마트자율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비대학원     선도		자율주행 인지 시스템		
	미래형 선박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LNG 선박용 기자재	
	(5개)	중소형 선박 원격 통합 통신 시스템	전기추진 선박 기자재	
_		중소형 선박 안전 항해 지원 서비스		
	바이오	약물전달시스템	생체유래 물질 감지 및 분석 시스템	
	(5개)	동물/미생물 세포배양 시스템	기능성 화장품	
		분자/면역 진단 시스템		
	전기수소차 (6개)	열관리시스템	배터리 교체 및 운용시스템	
		전력변환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	01+1-71-71	배터리 시스템	수소자동차 충전시스템	
	이차전지	바인더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 장치	
	(4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Reuse)	전해질 첨가제	